● 제303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6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11. 25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2915

Ⅰ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 출 일 : 2021. 10. 15.

다. 회 부 일 : 2021. 10. 20.

2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“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” 은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,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.

○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문성, 경험, 인적·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공공기관에 공기관 위탁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

나. 위탁유형 : 사무위탁(공기관 위탁)

다. 위탁기간 : 3년(2022.3. ~ 2025.3.)

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사무의 위탁)

○ 추진 필요성

-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, 삭제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이 있는 인력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공공성이 수반되어 공공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마. 위탁사무

○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

○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·의료·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

○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

○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

○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

○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

○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

바. 위탁사무 개요

○ 운영목적 :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·운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지원 추진

○ 운영방법 : 공기관 위탁

○ 시설규모 :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, 199㎡

○ 인력배치 : 15명(예방환경조성팀 4명, 삭제지원팀 7명, 피해지원팀 4명)

사. 수탁기간 선정방법 : 공기관 신규위탁(공개모집)

아. '22년 소요예산(안) : 1,106백만원

○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, 자본적 위탁사업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성폭력방지법」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"피해자"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'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제3호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예산반영 예정

다. 합　　의

○ '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: '21.10.6.(적정)

라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의 개요

○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(이하 “통합지원기관”이라 함)을 위탁하여 설치·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[1]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[2](신규)을 추진하고자,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·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

·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·의료·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

---

1) **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**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**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**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 <개정 2019. 3. 28.>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.>
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9. 3. 28.>

2) **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**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**"민간위탁"**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**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**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·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

·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

·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

·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

· 그 밖에 시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 등

<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치·운영 추진방향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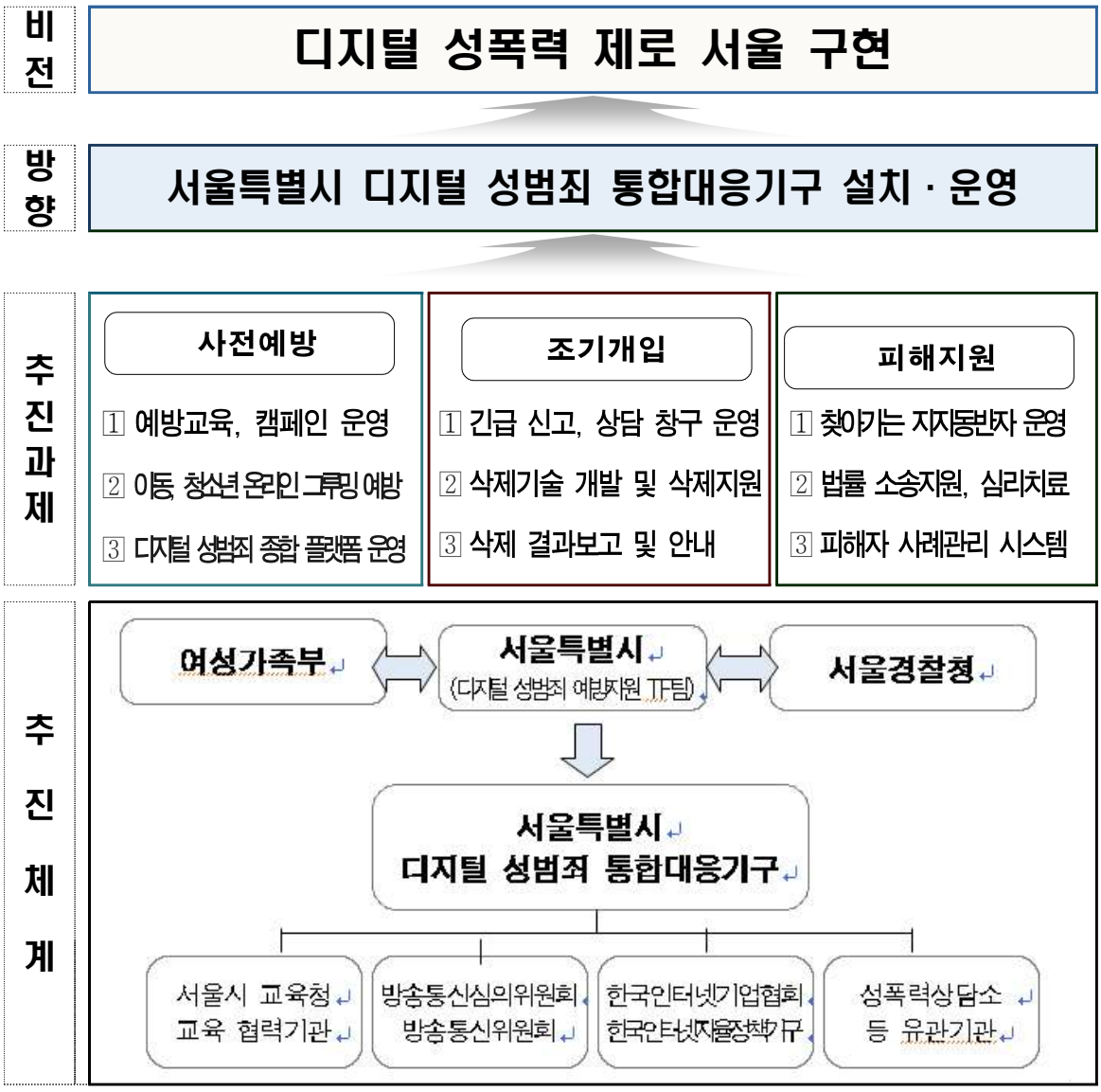

2 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○ 「지방자치법」[3]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(이하 '디지털성범죄예방조례')」(제7조)[4]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동 통합지원기관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
- 「민간위탁조례」제4조[5]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"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"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

---

3) **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**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**

4) **「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제7조(사업)**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
2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·의료·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
3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
4.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
5.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
6.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
7.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
8.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5) **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**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이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·의료·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,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통합지원기관의 운영은 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○ 또한 「디지털성범죄예방조례」(제11조)[6]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통합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.

※ 다만,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, '영상물 삭제지원의 공공성 확보'를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나, 서울시는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2항[7]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과 같은 법」제104조제3항[8]에 따른 민간위탁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,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 역시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를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「민간위탁조례」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.

---

6) **「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」제11조(사업)**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**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**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7) **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**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**

8) **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**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**

3 종합 검토 의견

○ 금번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위탁 동의안은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지원 등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띄는 사무를 추진하게 되는 바,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「디지털성범죄예방조례」를 근거로 추진하는 동 사무의 명칭이 “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”인 바, 이를 조례와 맞춰 “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